

지 정 토 론 (2)

권 오 승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오랫동안 기자로 언론사에 근무했지만 언론 윤리나 언론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언론 분쟁에 막연한 공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되어 어렴풋이 이해를 하게 됐지만 오늘 참석하신 많은 기자 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사례들을 보며 여러 언론인들이 현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언론분쟁 예방교육의 필요성

이상록 기자가 쓴 ‘언론분쟁 뛰어넘기’라는 책에서 언론분쟁에 휘말렸던 기자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언론분쟁을 기자 생활 최악의 순간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언론분쟁은 열악한 언론사의 교육 환경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언론사의 경우 더욱 열악한데, 언론진흥재단이 지난 해 펴낸 「국내 연예저널리즘의 현황과 품질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예 뉴스는 대부분 인터넷이 주도하고 주요 3~5개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직원이 5~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연예뉴스는 주요 아이템이 가십거리이고 프라이버시나 명예훼손과 직결되는데도 기자 대상 설문에서 많은 연예기자들이 기본적인 저널리즘 규칙이나 언론 윤리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 했다고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 대상 기사를 보면 기사 작성 수준이나 인격권 침해의 수준이 심각하게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분쟁 예방교육이 자주 실시된다면 이로 인해 기자들이 좋은 보도를 하고 언론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의 개념과 판단 기준의 확립 필요성

한편 우리나라의 공인 제도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신분 기준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내용 기준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책을 위한 진실의 입증 책임은 언론사에 두되 표현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가 공인인가 사인인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의 심사기준을 달리 함으로써 보도 내용의 공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또한 공인 관련 언론보도의 판결이 법관의 역량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자의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인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인 범위에 대해서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인의 경우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기업인들의 영향력은 유력 정치인보다 광범위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기업인을 공적 인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업인의 경우 공직자 못지않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펴낸 「2013년도 언론관련 판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년도 언론관련 판결 가운데 법원에서 공직자는 모두 16건 중 8건(50%)이 원고 승소 했고, 기업의 경우 12건 중 5건(42%)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아닌 기업인의 경우 4건의 재판 중 일부승소이기는 하나 모두 승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인도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인으로 취급해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공인이라는 용어의 정리 필요성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고위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나 공직자, 연예인 등을 공적 인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미국에서 public official을, 공적 인물은 public figure를 직역한 것 같은데 이들을 포괄할 용어를 개발해 국민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의 공동 노력 필요

제가 언론사에 근무하던 당시에 비하여 지금의 언론보도는 자체적으로 인격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박 모 전 국회의장 성

추문 관련 보도를 할 경우 예전에는 관련 장소나 인물의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했으나 지금은 이니셜조차 쓰지 않는 등 의식이 상당히 신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나 이에 대한 대응이 현재 미흡합니다. 모경제 신문의 논설위원이 1인 TV회사를 만들었는데 시청자 수가 웬만한 언론사보다 많다고 합니다. 또 SNS는 선거에서 유력한 정보소통공간이며 블로그는 뉴스를 유통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뉴미디어와 같은 유사언론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언론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언론학계, 법조계, 정치계, 언론인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미디어도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의 언론조정신청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국가기관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현황을 보면, 노태우 정부 집권 5년 간 조정 신청 건수는 8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때는 752건으로 이전 정부 때보다 6배 늘어났습니다.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직자와 언론과의 관계 설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오늘 논설실장이 노 대통령이 행정력의 대처로 언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논평했던 생각이 납니다.

현대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명예훼손이라 합니다. 저는 언론인 시절부터 지금 중재위원까지 많은 법조인과 학자들을 만났는데 언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언론인 못지않게 깊고 심오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법조인, 학자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읽은 언론학자의 칼럼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언론학을 공부하는 동안 많은 충격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수백 년간 언론의 자유와 자유 언론을 지극히 사랑하고 옹호하는 사람은 언론인이 아니라 정치인, 법조인, 학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들의 치밀정연한 논리와 열정에 감탄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국가가치 중심체제로 언론 자유를 상정했을까? 알면 알수록 열면 열수록 나쁜 일이 쏟아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까지 불리던 언론을 지식인들이 왜 그토록 절실히 지키려 했을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